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취약계층의 검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출장검진 수검대상으로 포함하고 검진기관 지정기준(신청자격, 인력기준, 장비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장검진기관 수검 대상 확대(안 제4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출장검진 대상에 포함시켜 거동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검진 접근성 강화

나. 암 검진기관 장비기준 정비(안 별표2)

현재 대장암 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대장이중조영검사 위한 장비인 대장조영촬영기기를 대장암 장비기준에서 제외함

다.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4)

일반검진기관 신청자격(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 구강검진기관 신청자격에 ‘치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병원’ 추가

라.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 정비(안 별표5)

출장검진기관 인력기준에 적시된 ‘의사 1인당 일일 최대 검진인원’은 시행규칙에서 삭제

마. 검진인력 근무기준 명확화(안 별지 1호서식 첨부)

검진기관 신청서 인력현황 란에 의미가 불명확한 ‘비상근 인력 제외’는 삭제하고 검진전담 인력의 근무기준을 주 2일 16시간 이상으로 명시

바. 암 검진기관 장비보유 현황 정비(안 별지 1호서식 첨부)

대장암 장비기준에서 대장조영촬영기기가 제외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암 검진기관 장비보유 현황에서도 삭제함

사. 영유아검진기관 장비보유현황 정비(안 별지 1호서식 첨부)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며 고시에 적시된 영유아 발달선별검사도구는 K-DST이므로 이를 반영하고 기존 도구인 K-ASQ, Denver-II는 삭제

아. 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 내 지정취소요청일 작성 추가(안 별지3호 서식)

현재 서식에는 지정취소요청일 작성란이 없어 검진기관 및 지자체의 현장 혼란 발생하므로 최종 검진일 다음 날로 지정취소요청일 작성케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령 제 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별표 2의 대장암 란의 장비기준 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4의 신청자격 란의 나목 중 “종합병원”을 “종합병원, 병원”으로 한다.

별표 5의 일반검진 란, 위암 란, 유방암 란, 대장암 란, 간암 란 및 자궁경부암 란의 인력기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의사 1명 이상

별표 5의 구강검진 란의 인력기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치과의사 1명 이상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 검진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의 제2호 중 “원무행정요원(비상근 인력은 제외)”를 “원무행정요원”으로, “검진전담 인력”을 “검진전담 인력(1주 간 2일 이상 검진기관에 출근하여 총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한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 검진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의 제4호 나목 중 일련번호 5번 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 검진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의 제4호 다목 중 일련번호 7번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					-
---	------------------	--	--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① · ② · ③ (생략)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① · ② · ③(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3.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